

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연 철 흠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」 제8조(사용료의 징수)의 단서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포괄적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」 제8조(사용료의 징수)의 단서 삭제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」 제8조(사용료의 징수)에서 포괄적인 감면규정을 삭제하

고자 하는 것으로,

- 시설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“공익 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”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